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수도 사용량 의무 상향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4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수도 사용량 의무 상향 및 설치 대상 시설물 확대	3
2. 국가 등 개발사업 시행시 중수도 운영 의무화	10
3. 중수도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물 재이용 전문교육 의무화	13
4. 중수도 관리·운영자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및 중수도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16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4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중수도 사용량 의무 상향 및 설치 대상 시설물 확대

개정안은 중수도 설치 시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고,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중수도 의무 연면적을 현행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하며,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각급 학교·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 ----- ----- ----- ----- ----- ~~20퍼센트~~ ----- ----- ----- ~~20퍼~~ ~~센트~~ -----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	1. ----- ----- -----

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u>6만제곱미터</u> 이상인 시설물 2.·2의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u>설치하여야</u>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u>2만제</u> <u>곱미터</u>----- 2.·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u> 2의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2의5.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u>건축물</u>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u>20퍼센트</u>----- -----<u>설치·운영하여야</u>----- ----- ----- ----- ----- -----<u>20퍼센트</u>----- ----- ----- 1. ~ 5. (현행과 같음)
--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함.¹⁾

현행법 제9조²⁾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예외적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 중수도 설치 의무가 면제됨.

참고로, 현행법상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종류는 건축연면적 60,000m²이상인 숙박업·목욕장업·대규모점포·물류시설,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³ 이상인 공장 또는 발전시설 등으로 다음과 같음.

-
- 1) 중수도 도입은 평상시 물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상수원 확보에 여유를 주고, 보다 양질의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또한, 중수도 사용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어,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공공하수처리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연안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구분	기준
숙박업·목욕장업	건축연면적 60,000m ² 이상
공장·발전시설	1일 폐수배출량 1,500m ³ 이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건축연면적 60,000m ²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이에 따라 설치된 법적 의무 대상 중수도는 2023년 하수도통계 기준 411개이고, 이외에도 비의무 대상 중수도는 607개로, 전국에 총 1,018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중수도 설치 현황]

(단위 : 개)

전체	의무 대상	비의무 대상
1,018	411 (40.4%)	607 (59.6%)

자료 : 2023년 하수도통계(환경부)

중수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수 재이용량은 2023년 기준 2억 2천만m³로, 이 중 약 2.1억m³은 개별공장(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수를 공장 내 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음.

〈최근 5년간('19~'23년) 중수도 재이용 현황〉

(단위 : 개소, 만m³/년)

구 분 시설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설수	재이용	시설수	재이용	시설수	재이용	시설수	재이용	시설수	재이용
합 계	760	30,467	821	37,487	886	25,481	970	24,346	1,018	22,248
공 장	118	29,150	127	32,885	133	22,227	138	21,536	162	20,933
대규모 점포	83	242	83	259	90	208	91	366	83	118
숙박업, 목욕장	43	234	70	250	65	128	62	126	34	65
업무시설	321	211	350	268	393	136	407	115	362	57
운수시설, 물류시설	12	34	15	456	18	260	25	253	33	410
방송국, 전신국	6	1	9	13	9	7	9	7	6	2
기 타	177	595	167	3,356	178	2,515	238	1,943	338	663

※ 기타 : 발전시설, 교정시설, 학교, 병원, 체육관 등

자료 : 환경부

2018년 기준 연간 수자원 이용량 중 중수도 재이용 비중은 0.94%³⁾

3) 국가물관리위원회(2021)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2018년 수자원 이용량]

구분	댐	하천수	지하수	하수 재이용	중수도	빗물	해수 담수화	합계
이용량 (억 m³/년)	203.9	133.2	29.1	11.1	3.6	0.08	0.03	381.0
비율(%)	53.52	34.96	7.64	2.91	0.94	0.02	0.01	100.0

로, 개정안은 중수도 사용량 의무 비중을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수도 설치·이용 활성화 및 물 재이용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수도 재이용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은 물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절약 및 환경보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그 활용처가 공업용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청소·화장실 용수 및 조경용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재이용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물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건축 연면적 6만 m^2 이상인 시설 기준을 2만 m^2 이상으로 하향하고,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각급 학교·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중수도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의 경우, 환경부 보고서⁴⁾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하루 1,500 m^3 미만인 시설의 경우 중수도 설치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므로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관리계획의 중수도 연간 사용량 목표는 '20년 기준 515.4백만 m^3 /년으로, '18년 실적(359.4백만 m^3 /년)은 관리계획 대비 69.7% 수준

* 관리계획의 건축물별 중수도 계획사용량 목표 대비 실제 중수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방송국/전신전화국 1,324.0%, 물류/운수시설 1,293.1%, 대규모 점포 124.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공장/발전시설 75.0%, 기타 63.0%, 숙박/목욕장업 52.9%, 업무시설/교정시설 39.2%, 도시개발 0.3%, 관광단지개발 0.1%, 산업단지개발 0.0% 수준으로 저조

4) ※ 참고1 : 중수도 경제성 분석 결과 요약 참조

환경부(2004), 「중수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보고서」

- 시설용량 150 m^3 /일 이상일 경우 중수사용에 의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므로, 물 사용량 1,500 m^3 /일 미만(물 사용량의 10% 의무사용량 반영)인 경우 경제적 편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구체적으로, ① 300세대 공동주택의 물 사용량을 추정해보면 하루 207.9m³⁵⁾의 사용량을, ② 각급 학교의 경우 하루 22.59m³ ~ 52.16m³의 사용량을 보이므로 경제적 편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⁶⁾

환경부는 물 재이용의 공공성·경제성·수요처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중수도 의무화를 확대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이를 고려해볼 때, 중수도 설치·이용 제도는 향후 보다 충분한 연구,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에 설치 의무화대상의 확대 문제를 포함하여 중수도의 전반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5) 자료 : 환경부

☐ 분석방법

- 1인당 물 사용량 : 303.9ℓ/일('23년 상수도통계)
- 가구당 인구수 : 2.28명('23년 인구주택 총조사)
* (인구) 51,774,521명, (가구수) 22,728,163가구

☐ 분석결과

- 300세대 추정 물 사용량 : 207.9m³/일

$$303.9 \text{ ℓ/일} \cdot \text{인} \times 2.28 \text{ 인/가구} \times 300 \text{ 가구} \times 1000 \text{ ℓ/m}^3 = 207.9 \text{ m}^3/\text{일}$$

6) 특별건축구역의 물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보되어있지 않음.

2. 국가 등 개발사업 시행시 중수도 운영 의무화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일정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 중수도 ‘설치’ 의무를 ‘설치·운영’ 의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생략)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u>설치하여야</u>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u>10퍼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20퍼센트~~ ----- ----- <u>설치</u> · <u>운영하여야</u> ----- ----- ----- ----- ----- ----- ----- ----- <u>20퍼센트</u> ----- -----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의 경우, 법률에 그 운영·관리 의무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과거 개발사업시행자가 중수도 운영·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중수도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⁷⁾에 따라, 기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중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개발사업시행자와 중수도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동법을 개정⁸⁾하였던 연혁에 따른 것임.

개정안은 국가 및 개발사업자의 의무를 기존 ‘설치’에서 ‘설치·운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수도 시설이 설치 이후 실제로 운영되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량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의가 있음.

7)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9조의7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게 중수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공기업 등 개발사업 시행업자는 중수도, 하수도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위탁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입장임.
출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527호- 검토보고」(환경노동위원회, 2023.9.)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5호, 2024.1.23. 일부개정]

다만, 중수도는 정수, 저장, 배관, 재공급 등 복합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에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접 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중수도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시설 유지·보수·인력 배치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운영체계 정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중수도 운영 주체를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중수도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로 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문제 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3. 중수도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물 재이용 전문교육 의무화

개정안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2항 및 제14항 신설, 안 제2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⑪ (생략) <u><신설></u>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⑪ (생략) <u>⑫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u>
<u><신설></u>	<u>⑬ (생략)</u>
<u><신설></u>	<u>⑭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2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8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 ----- -----. 1. ~ 7. (생략) <u>7의2.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u>

8. (생략)	<u>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중수도는 위생·시설 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설치 이후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 역량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수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수도 운영 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중수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의 안정성 및 활용성에 대한 교육·홍보 확대를 계획⁹⁾하고 있는 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중수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전문교육을 통해 시설의 운영 품질 향상, 수질 사고 방지 등 위생·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수도의 설계방안에 운영·유지관리의 자동화 및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교육 의무화에 대한 신

9) 대구정책연구원, 「대구광역시 중수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24.8.

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교육 의무는 시설의 운영·관리자가 아니라 운영 요원, 즉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인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수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실제로 설비를 다루는 시설 관리 위탁업체 등 실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유사입법례]

「하수도법」

- 제67조(교육)**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 분뇨수집·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수도 관리·운영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중수도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개정안은 중수도를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9조제13항 신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⑫ (생략) <u><신설></u>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⑫ (생략)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관리·운 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2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u>설치하지</u>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를 <u>설치하지</u> 아니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u>설치·운영하지</u> ----- 2의2. ----- --- <u>설치·운영하지</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삭제>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삭제>
5. ~ 8. (생략)	5. ~ 8. (생략)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중수도는 정수, 저장, 배관, 재공급 등 복합적인 설비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이로 인해 실제 가동률이 낮고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수도 관리·운영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중수도 운영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중수도의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실질적인 가동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제23조제2항¹⁰⁾에 근거하여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실제 운영률 제고와의 연계성이 낮은 점이 있으므로, 운영비 직접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설치된 중수도의 상당수가 민간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국고·지방비)을 활용한 비용 지원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해 보임.

공공성을 갖춘 시설이나 공공사업에 연계된 경우와 달리,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형평성과 공공재정 운용 원칙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중수도 ‘미설치’와 ‘미운영’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과태료 500만원으로의 상향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정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태료 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예컨대, 동법 제8조제1항¹¹⁾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의 경우, ‘미설치’는 과태료 500만원, ‘미운영’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구분¹²⁾하여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두 경우 과태료를 상이하
게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6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